

현장실습학기제 안내[기업용]

한세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목차

1. 현장실습학기제 정의
2.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및 이수기준
3.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내용
4. 현장실습생 지침
5. 기업체 입력 및 제출사항

1

현장실습학기제 정의

1. 현장실습학기제

- 1) 기업(기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 2)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2. 현장실습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국내·외 기관

- 1) 학생의 주전공분야와 연관된 기업(관)
- 2) 학생의 전공지식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한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기업(관)
- 3)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관)
- 4) 기타 현장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관)
- 5)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필수)할 수 있는 기업(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2018.09.11. 시행]

1

현장실습학기제 정의

3. 현장실습지원센터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해 대학별로 운영하는 조직

4. 현장실습생 (현장실습참여자)

: 학점 및 실무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현장실습)를 신청·참여하는 학생

1. 실습 기간이 속한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납부한 학생 ※ 미납 시 선발 취소
2. 정규학기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졸업예정자는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3. 수강신청 전 현장실습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
4. 졸업예정학기 해당자는 방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참여할 수 없음
※ 단기현장실습 3학점을 포함하여도 졸업보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졸업보류확인서 제출 필요)

2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및 이수기준

1. 실습 구분 : 운영 시점과 기간에 따라 학기제/계절제, 국내/해외로 구분

지역 \ 학기	학기제	계절제
국내	국내 장기현장실습학기제	국내 단기현장실습학기제
해외	해외 장기현장실습학기제	해외 단기현장실습학기제

2. 교과목 이수 기준

교과목명	학기구분	인정학점	실습기간(시간)	성적평가
단기현장실습A I /Ⅱ	계절학기	3학점	4주(160시간) 이상	주전공의 전공선택 (PASS/ NON-PASS)
단기현장실습B I /Ⅱ	계절학기	6학점	8주(320시간) 이상	
장기현장실습 I /Ⅱ	1,2학기	15학점	14주(560시간) 이상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습기간 내 주말, 공휴일 제외한 실습 기간(시간)이 최소 기준 이수 경우만 학점 부여

2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및 이수기준

3. 현장실습 가능 학년

-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학년, 4학년)

4. 필수사항

※ 현장실습 참여기관은 현장실습 참여 기간 동안 학생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2018.09.11. 시행] : 4대 보험 중 기업 산업재해보상보험 (관) 측에서 (의무적 산재보험 으로 가입)에 대해서는 되어야 하는 사항

5. 2026학년도 장기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가. 2026. 03. 01. ~ 06. 22.(1학기)

나. 2026. 09. 01. ~ 12. 22.(2학기)

다. 2026. 06. 23. ~ 08. 31.(여름학기)

라. 2026. 12. 23. ~ 2027. 02. 28.(겨울학기)

※ 주 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 기준 (점심시간 제외)

※ 실습기간 내 주말, 공휴일 시간 제외

※ 실습기간 이후 연장근무

- 현장실습과 별개

- 회사와 학생의 협의로 진행

- 보고서 : 기존 실습기간대로 작성 (연장 기간 작성X)

2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및 이수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제외 기준

- 1) 학생 개인이 기업(관)을 섭외한 경우 및 (공채)인턴 등의 형태
- 2) 학교와 무관하게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 3)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 4)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과 간헐적/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5) 해당 학부(과)와 관련성이 없는 현장실습
- 6) 학부(과) 특성상 (전문)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2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및 이수기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전부개정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2021.7.6.)에
따라 표준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운영

구분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정의	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으로 운영	표준화된 운영기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제1항) 으로 운영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의무)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 초과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100 이상, 25/100 이하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의무)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	교육시간 고려 시간급 최저 임금의 75/100 이상
현장실습 지원비	월 1,617,660원 미만 (26년 최저임금 월 2,156,880원의 75% 미만)	월 1,617,660원 미만 (26년 최저임금 월 2,156,880원의 75%이상)
운영기간 및 시간	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으로 운영	실습기관 전일제 기반 1일 8시간 (월 단위 최소 1개월 이상 편성)
보험가입 유무	산재보험 가입 의무 (상해보험 가입)	산재보험 가입 의무 (상해보험 가입)

3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내용

1) **기업(관)**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식비, 교통비, 여비 등을 포함한 학생들의 교육지원비용으로서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음
- 실습지원비의 지급 수준 : 표준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따라 상이함
관련근거 :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2021.7.6.)
- 표준 : 월 1,617,660원 이상 (26년 최저임금 월 2,156,880원의 75% 이상)
- 자율 : 월 1,617,660원 미만 (26년 최저임금 월 2,156,880원의 75% 미만)

2) **학교**는 학생들에게 장기/단기현장실습 이수 시 **장학금 지급**

	실습기관	학교
금액	협약서에 명시된 현장실습지원비	단기현장실습A : 300,000원 단기현장실습B : 500,000원 장기현장실습 : 1,000,000원
지급일자	기관 지급일정에 맞추어 지급	실습 종료 후 학점 이수가 확인된 이후

4 현장실습생 지침

- 1) 실습시간은 기업의 규정에 준하며, 직원과 동일한 자세로 실습에 임하도록 한다.
- 2) 최소 10분 전에 출근하여 업무에 관계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한다.
- 3) 근태(결근, 조퇴, 지각 등)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실습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허락을 받도록 한다.
- 4) 실습하며 알게된 기업의 내부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으며, 실습목적이라도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실습 종료 후, 실습 관련 내용을 외부에 게재할 때는 반드시 실습담당자에게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야한다.
- 5) 복장은 실습기업의 특성과 맞게 취하되 가능한 화려한 것을 피하고 단정하게 착용하도록 한다.
- 6) 안전사고에 만반을 기하도록 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기업의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그에 준해 처리하도록 한다.
- 7) 실습일지를 비롯한 각종 실습기록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과제물은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한다.

5 기업체 입력 및 제출 사항

현장실습시스템 입력 및 제출 내용

: 실습 진행을 위해 기업에서 입력 및 제출해야하는 내용

1. 실습 전

- 시스템 가입 (=실습기관정보 내용 입력), - 부서관리 입력, - 운영계획서 및 참여신청서 입력
- 지원자 선정, - 온라인 3자 협약 체결, - 산재보험 가입내역 업로드

2) 실습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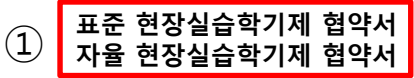
- 출근부 입력, - 방문지도 협조 입력 내용 협조 요청, * 방문지도 : 실습기간 내 지도교수의 실습기관 방문 (협의, 현장지도, 사진촬영 등)

3) 실습 종료

- 출근부 제출, - 기업 평가표 제출, - 현장실습 설문조사

4) 요청사항

- 중간점검 : 운영계획서대로 실습이 진행되는지 학생 대상으로 실시
-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제출 협조 : 실습 종료시점 메일로 송부드린 서류에 기업 직인 요청
- 실습지원비 : 기업명 으로 입금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장기 : 14주(560시간)이상

▶ 3자 협약

1. 협약서 작성

③ 실습기관과 협의한
실습지원비 일치여부 확인

* 산재보험 가입(필수사항) 확인

④ 협약 내용 확인 후 동의

한세대학교

HANSEI UNIVERSITY

프로그램 안내

신청관리

3자협약

보고서 관리

커뮤니티

참가이력조회

로그아웃

3자협약

HOME >> 3자협약

진행상태

진행중

년도

전체

학기

전체

2022년도 하계 현장실습_테스트

2023 1학기 실습

6. 실습지원비 등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월 기준 1,440,000원 (세전)을 [당월] 1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워렌·가스·부지 등에 의한 거각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 상 필수사항을 조치한다.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자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 및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0월 17일

[학교]	[실습기관]	[학생]
한세대학교	OO 기업	한세대학교
한세대학교총장직무대리부총장 :		
김 정 일	대표자 명 : 홍길동	ICT융합학과 : 김한세

4

위의 협약서 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협약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5

제출 기한 및 유의사항

1. 제출기한 :

실습 종료일에 현장실습시스템상 저장 후 제출

2. 보고서 제출 시 유의사항

- 1) 실습 담당자 변경 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 필수
- 2) 보고서의 실습기간, 실습시간, 실습담당자 등은 동일해야 함
- 3) 보고서 제출 후 수정불가 * 수정 희망 시 현장실습지원센터에 문의
- 4) 종료 시점에 메일로 송부드리는 매뉴얼 참고하여 작성

질문사항(Q&A)

<위치> 본관 3층(301호)
대학일자리본부 내 현장실습지원센터

Tel : 031-450-5286 / 5034
E-Mail : iban@hansei.ac.kr